

사회학과 학부 졸업논문 운영방식 변경(추가) 안내

사회학과에서는 학부 졸업논문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. 2023년도 후기 (2024년 8월) 졸업예정자부터 변경된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.

1. 관련규정

■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조

- 제60조(졸업논문)** ① 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,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.
- ②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. 이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.
- ③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전 과정과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시행일 이전에 해당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,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- ⑤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■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

- 제68조(졸업논문)**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(실험·실습·설계보고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 등을 포함한다)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(개정 2012.12.20)
-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전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.
-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. 다만,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(전공)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. (단서신설 2010.7.28., 개정 2017.11.20.)
- ⑤ 졸업논문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2. 졸업논문 운영방식 변경(추가) 내용

가. 시행 시기: **2023학년도 후기(2024학년도 8월) 졸업예정자부터 적용**

나. 졸업논문 운영방식 변경 내용

- (기존 인정범위) 졸업논문(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승인) 또는 ‘논문연구실습’ 이수 시 논문보고서(강의 담당교수의 승인)
- (추가된 인정범위) ① TOEIC 900점 이상 ② 사회조사분석사 2급

구분			운영방식	인정범위 및 내용	비고
기존	트랙1	논문	졸업논문	정해진 기간 내 졸업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후 논문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검토·승인	택1
			‘논문연구실습’ 이수 시 논문보고서	‘논문연구실습(25336, 4학년)’ 수강생의 최종 논문보고서에 대한 강의 담당교수의 승인	
추가	트랙2	어학	TOEIC 900점 이상 ※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으로,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		
	트랙3	자격증	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취득		

※ 향후 졸업논문 인정범위가 추가 될 수 있음.

3. ‘논문연구실습’ 수강 대상자

- **6학기 이상** 학생들만 수강 신청 가능
- 논문연구실습 수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**14명** 이하 학생들만 수강신청 가능

4. ‘논문연구실습’ 이수 후 논문보고서 제출 시 **유의사항**

- 논문연구실습 수강 후 논문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논문으로 대체함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졸업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1) 논문보고서의 양과 질이 졸업논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- 2) 인용 없이 다른 논문, 보고서 등을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

2024. 3. 4.

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장